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22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김예지 · 안철수 · 강경숙
김대식 · 유용원 · 박덕흠
김상훈 · 김소희 · 고동진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

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제9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형법」 제28장·제40장”을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형법」 제39장의 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 1의6. (생략)</p> <p>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 다. (생략)</p> <p>1의8.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p> <p>1. ~ 1의6. (현행과 같음)</p> <p>1의7.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1의8.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